

# 변경대비표

## [투자설명서]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NH-Amundi 글로벌 웰스&헬스 증권자투자신탁(UH)[주식]

2. 효력발생일 : 2023년 3월 29일

3. 정정사유 :

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
- 변동성(표준편차) 변경사항 반영 ( $15.73\% \rightarrow 15.65\%$ , 2등급 유지)
-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발생내역 추가
- 소득세법 개정사항(2023.01.01) 반영 (연금계좌 세액공제)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(2023.02.20 시행) 반영

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<요약정보>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 운용전문인력	-	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제2부. 2. 집합투자 기구의 연혁	-	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제2부. 5. 운용전문 인력	-	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제2부. 10.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위험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최근 결산시점을 기준 으로 과거 3년간의 수익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. 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<u>15.73%</u> 로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최근 결산시점을 기준 으로 과거 3년간의 수익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. 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<u>15.65%</u> 로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제2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<신설>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주2) <u>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거래비 용 및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</u>  [표: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구성 및 직전 회 계기간 중 발생 내역(단위: 원)]  (현행과 동일)  - 상기 금융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금융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 으며, 계산이 가능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비용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  결산일 및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
제2부. 14. 이의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(4) 연금저축계좌 가 입자에 대한 과세	<납입요건>  가입기간 5년 이상, <u>연 1,800 만원 한도</u>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	<납입요건>  가입기간 5년 이상, <u>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</u> <u>한 금액 이내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</u>  1. <u>연 1,800 만원</u> 2. <u>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</u> <u>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</u> <u>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, 전환금액이라 한</u> <u>다)</u>
	<연금계좌세액공제>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u>400만원</u> 이내 세액 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  다만,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 제가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됩니다.  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<u>4천만원</u> 이하(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u>400만원</u> 이내 세액공제 16.5%(지방소득 세 포함)  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 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 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 액 <u>300만원</u>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	<연금저축계좌세액공제>  <u>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</u> 1.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u>600만원</u> 이내 세 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  다만,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 제가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됩니다.  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<u>4천500만원</u> 이하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 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u>600만원</u> 이내 세액공제 16.5%(지방 소득세 포함)  <삭제>
		2. <u>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 금액이 있는</u> <u>경우 전환 금액의 10% 또는 300만원(직전 과세</u> <u>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</u> <u>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</u> <u>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중 적은 금액</u>  [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년 1 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]
	<연금수령시 과세>  연금소득세 5.5 ~ 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 세 가능)  단, <u>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%</u>	<연금수령시 과세>  연금소득세 5.5 ~ 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 세 가능)  단, <u>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</u> <u>아래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 적용</u> 1. 연금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: <u>연</u> <u>금 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%</u> 2. 연금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 우: <u>연금 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%</u>
	<분리과세한도>  <신설>	<분리과세한도>  연 1,2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가능 [2023년 1월 1일]

		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]
	<p>&lt;특별 중도해지 (연금외수령) 사유&gt;</p> <p>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<u>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</u> <u>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</u>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</p>	<p>&lt;특별 중도해지 (연금외수령) 사유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천재지변</li> <li>-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</li> <li>-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·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 - 가입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</li> <li>-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</li> <li>-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 결의, 파산선고</li> </ul>
제2부.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(5) 퇴직연금 가입자 에 대한 과세	<p>① 연금계좌 세액공제</p> <p>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400만원</u> 이내의 금액)과 연 <u>700만원</u> 중 적은 금액의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. 다만,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<u>4천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400 만원</u> 이내의 금액)과 연 <u>700 만원</u> 중 적은 금액의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</li> <li>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<u>4천 500 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600 만원</u> 이내의 금액)과 연 <u>900 만원</u> 중 적은 금액의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</li> </ul> <p>&lt;삭제&gt;</p> <p>(이하 생략)</p>	<p>① 연금계좌 세액공제</p> <p>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600만원</u> 이내의 금액)과 연 <u>900만원</u> 중 적은 금액의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. 다만,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<u>4천 500 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600 만원</u> 이내의 금액)과 연 <u>900 만원</u> 중 적은 금액의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</li> </ul>
[제2부 별첨1] 모두 자신탁에 관한 사항	<p>1. NH-Amundi 글로벌 웰스&amp;헬스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다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(1) 투자전략 (3) 주요 투자대상국 현황</p>	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 실적 등에 관한 사항	<p>1. 재무정보 1) 요약재무정보 &lt;신설&gt;</p>	<p>1. 재무정보 1) 요약재무정보 <u>&lt;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&gt;</u> <u>&lt;주식의 매매회전율&gt;</u></p> <p>결산일 및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</p>
제4부. 1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-	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제5부. 4.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	-	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
# 변경대비표

## [간이투자설명서]

- 집합투자기구 명칭 : NH-Amundi 글로벌 웰스&헬스 증권자투자신탁(UH)[주식]
- 효력발생일 : 2023년 3월 29일
- 정정사유 :
  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

### 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<요약정보>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 운용전문인력	-	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